

[16] 지방세 지출보고서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5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2,116,694,543,440
	비과세	290,621,559,680
	감면	1,826,072,983,760
지방세 징수액(B)		15,361,453,954,969
비과세.감면율(A/A+B)		12.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5년(결산)	
총 계		2,116,694,543,440	비중 100.0
1	일반공공행정	146,893,105,130	6.9
2	공공질서 및 안전	1,670,027,360	0.1
3	교육	16,664,820,850	0.8
4	문화 및 관광	28,591,352,520	1.3
5	환경보호	18,674,617,210	0.9
6	사회복지	398,389,292,780	18.8
7	보건	4,708,082,050	0.2
8	농림해양수산	28,698,643,940	1.4
9	산업·중소기업	888,684,063,220	42
10	수송 및 교통	143,324,946,160	6.8
11	국토 및 지역개발	239,207,789,380	11.3
12	과학기술	76,842,490	0
13	국가	94,610,556,880	4.5
14	외국	22,099,010	0
15	기타	106,478,304,460	5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5년(결산)	비중
총 계		2,116,694,543,440	100
	보통세	2,087,640,448,480	98.6
	취득세	2,080,780,496,760	98.3
	등록면허세	6,859,951,720	0.3
	목적세	29,054,094,960	1.4
	지역자원시설세	29,051,549,320	1.4
	지방교육세	2,545,640	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24년(결산)	‘25년(결산)	증감액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72,484,886,630	805,380,922,130	132,896,035,50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16,720,288,960	133,618,537,950	-83,101,751,01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40,372,758,440	102,793,267,100	62,420,508,66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85,646,316,330	30,668,005,190	-54,978,311,1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32,530,902,050	78,329,097,900	-54,201,804,15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70,018,531,830	122,729,151,380	-47,289,380,450
국가에 대한 비과세	41,375,215,650	76,211,582,170	34,836,366,52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50,335,190,550	25,646,743,700	-24,688,446,850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94,436,729,320	75,697,976,560	-18,738,752,760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5,049,433,100	18,674,603,440	13,625,170,3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3,988,998,840	3,274,522,600	-10,714,476,24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40,355,816,530	31,932,586,960	-8,423,229,57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42,301,325,540	34,519,166,070	-7,782,159,47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146,893,105,13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75,697,976,560
		취 득 세	63,632,706,490
		등록면허세	507,492,660
		지역자원시설세	11,557,777,410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36,220,434,770
		취 득 세	36,220,434,770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97,219,090
		지역자원시설세	97,219,090
4	정당에 대한 감면 -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96,790
		지역자원시설세	96,790
5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357,012,370
		취 득 세	269,736,590
		등록면허세	8,081,500
		지역자원시설세	79,194,280
6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1,199,480
		등록면허세	595,360
		지역자원시설세	604,120
7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34,519,166,070
		취 득 세	34,519,166,07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670,027,360
1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1호) - (경북)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양산)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양산)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 (남원)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조례)감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면 - (조례)천재지변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 (취득세 100%)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소 계	1,670,024,760
		취 득 세	1,659,801,460
		등록면허세	2,512,000
		지역자원시설세	7,711,300
2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비과세·감면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 계	2,600
		지역자원시설세	2,60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교 육		합 계	16,664,820,85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 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3,204,482,950
		취 득 세	753,976,170
		등록면허세	18,660,000
		지역자원시설세	2,431,846,780
2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833,720
		지역자원시설세	1,833,720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 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 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	소 계	12,031,980,020
		취 득 세	8,251,249,9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폐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등록면허세	11,495,000
		지역자원시설세	3,769,235,080
4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3③, §44①)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②) -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44③)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4④)	소 계	772,532,680
		취 득 세	770,482,130
		지역자원시설세	2,050,550
5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653,991,480
		취 득 세	653,991,48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28,591,352,520
1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민법 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5%(감염병전문병원 25%), 재산세 25%(감염병전문병원 35%),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8,128,269,640
		취 득 세	24,206,064,730
		등록면허세	11,626,000
		지역자원시설세	3,910,578,91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2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감면 - 종교행위·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182,060
		지역자원시설세	182,060
3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462,900,820
		취 득 세	462,900,82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8,674,617,210
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서울 서초)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조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소 계	13,770
		취 득 세	13,770
2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3~1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2년간), 재산세 50%(그 다음 3년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③) - (제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 계	18,674,603,440
		취 득 세	18,674,603,44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398,389,292,780
1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조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소 계	21,157,465,820
		취 득 세	21,157,465,820
2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734,297,530
		취 득 세	733,912,160
		지역자원시설세	385,370
3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복지협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22①1호) -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25% 감면(조례추가50%, §22①, §22②, §22③, §22④) -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포함)에 대한 주민세 면제, §22⑤, §22⑥, §22⑦)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 (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⑧)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소 계	1,336,476,070
		취 득 세	1,072,169,620
		등록면허세	19,607,150
		지역자원시설세	244,699,300
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자녀이상 취득세 면제(140만원 한도), 2자녀 50% 감면(70만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22의2③)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 계	102,793,267,100
		취 득 세	102,793,267,1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자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26,107,770,340
		취 득 세	26,095,664,450
		지역자원시설세	12,105,890
6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64,881,570
		취 득 세	64,881,570
7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3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8,482,980
		취 득 세	8,482,980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승용자동차 취득·자동차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7,131,283,190
		취 득 세	7,127,276,590
		등록면허세	196,000
		지역자원시설세	3,810,600
9	주거안정지원 등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200만원 限), 재산세 50%(60㎡이하), 재산세 25%(60㎡초과),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4①,②,③)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4④)	소 계	2,695,193,180
		취 득 세	2,694,535,180
		등록면허세	658,0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1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설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20호이상)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60㎡이하 취득세 면제, 20호이상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적별 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면적별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폐지)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4)(폐지)	소 계	111,528,605,020
		취 득 세	111,528,605,020
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50% 감면(150만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신탁계약 포함)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폐지)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공사가격 6억원限)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2,102,418,600
		등록면허세	2,102,418,600
12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폐지)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100%(소형외주택 200만원 限, 소형주택 300만원 限)(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소 계	122,729,151,380
		취 득 세	122,729,151,380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보건		합 계	4,708,082,050
1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3,585,149,500
		취 득 세	3,585,149,500
2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2)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감염병전문병원 8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1,122,932,550
		취 득 세	1,122,856,050
		등록면허세	76,50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8,698,643,940
1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폐지)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한국농어촌공사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감면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제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감면	소 계	10,620,294,400
		취 득 세	10,620,010,900
		등록면허세	283,5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2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폐지)	소 계	6,253,900
		취 득 세	6,253,900
3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 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3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4,513,644,900
		취 득 세	4,513,644,900
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폐지)	소 계	4,474,175,810
		취 득 세	4,474,175,810
5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사업소)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69,560,140
		취 득 세	69,560,140
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58,490
		지역자원시설세	58,4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7	어업인에 대한 감면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사업소)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106의2① 1호)	소 계	12,522,990
		취 득 세	1,447,050
		등록면허세	9,747,000
		지역자원시설세	1,328,940
8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폐지)	소 계	277,500
		취 득 세	277,500
9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	소 계	2,952,411,630
		등록면허세	2,952,411,630
1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5,828,857,930
		취 득 세	5,828,857,930
1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80만원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220,586,250
		취 득 세	220,586,25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888,684,063,220
1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 계	1,297,199,430
		취 득 세	1,297,199,430
2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	소 계	9,223,743,410
		취 득 세	9,223,743,41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특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③)(폐지)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19②, §120③, §121)(폐지)		
3	연구·개발 자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④)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3,274,522,600
		취 득 세	3,274,522,600
4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재산세 6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 50%(수도권 외 지역 재산세 6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하고 3년간 재산세 50% 감면(수도권 외 지역 60%)(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재산세 35%(+조례 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소 계	30,668,005,190
		취 득 세	30,668,005,1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3) -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 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 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 50~100%, 재산세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1,552,000,070
		취 득 세	1,552,000,070
6	지방이전 지원 등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0)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5)	소 계	2,430,920,460
		취 득 세	2,299,464,060
		등록면허세	131,456,400
7	에너지산업 자원을 위한 과세특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폐지) -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폐지) -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충북) 도시가스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감면	소 계	1,822,160
		취 득 세	1,822,1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8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폐지)	소 계	18,000
		등록면허세	18,000
9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감면,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805,380,922,130
		취 득 세	805,380,922,130
10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 50% 감면,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폐지)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2,922,322,810
		취 득 세	2,872,185,180
		등록면허세	50,137,630
11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50%~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3,5,7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폐지)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소 계	31,932,586,960
		취 득 세	31,932,586,9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 ②,③,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④)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43,324,946,160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철도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100%감면(조례로 조정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⑥)	소 계	1,750,871,240
		취 득 세	1,750,871,240
2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145②)	소 계	930
		지역자원시설세	930
3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75만원 限)·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 계	23,409,669,680
		취 득 세	23,409,669,680
4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및 공제(40만원초과 시 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 수소전기화물차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⑤) - (제주)전기자동차로서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자동차세 감면	소 계	93,271,639,670
		취 득 세	93,271,639,67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5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4,660,260
		취 득 세	4,660,260
6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75~100%)(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 계	22,875,989,020
		취 득 세	22,875,989,020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25%(+조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2,012,115,360
		취 득 세	2,012,115,36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239,207,789,380
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19,174,702,340
		취 득 세	19,174,702,340
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폐지)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소 계	5,432,584,730
		취 득 세	5,432,584,7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폐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감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④)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60제곱미터 75% 감면, 85 제곱미터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종전 부동산 가액합계 내에서는 취득세 면제하고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한하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①, §74의2③3) -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현물약정 체결한 경우 취득세 면제, 미체결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1) -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4의2③2)	소 계	78,329,097,900
		취 득 세	78,329,097,900
4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폐지)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소 계	133,618,537,950
		취 득 세	133,618,537,9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광역시·도·자치경찰청)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법50%+ 조례25%) - (전주)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 임대 목적 부동산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재신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400,000
		등록면허세	400,000
6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조례로 조정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2)	소 계	2,652,466,460
		취 득 세	2,652,466,460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76,842,490
1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	소 계	76,842,490
		취 득 세	76,842,490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국 가		합 계	94,610,556,88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 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76,211,582,170
		취 득 세	69,642,610,790
		등록면허세	116,180,390
		지역자원시설세	6,452,790,990
2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18,243,045,790
		취 득 세	18,243,045,790
3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53,643,100
		지역자원시설세	153,643,100
4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소 계	2,285,820
		지역자원시설세	2,285,820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외 국		합 계	22,099,010
1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 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 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166,390
		등록면허세	15,000
		지역자원시설세	151,390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 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62.5~100% 감면 (지방세특 례제한법 §81의2)	소 계	21,932,620
		취 득 세	21,932,620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기 타		합 계	106,478,304,46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145②)	소 계	311,895,850
		취 득 세	3,425,970
		지역자원시설세	308,469,880
2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4,619,110,500
		취 득 세	4,619,110,500
3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 「장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163,905,420
		취 득 세	163,905,420
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7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58,189,851,160
		취 득 세	58,189,851,160
5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25,646,743,700
		취 득 세	25,646,743,700
6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330,410
		취 득 세	330,410
7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소 계	14,400,617,350
		취 득 세	14,128,770,75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5년(결산)
	등록면허세 부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 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등록면허세	271,846,600
8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3,448,220
		지역자원시설세	3,448,220
9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1,050,540
		취 득 세	1,050,540
10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2,460,488,380
		취 득 세	2,460,488,380
11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소 계	24,242,780
		취 득 세	24,242,780
12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656,620,150
		등록면허세	644,036,800
		지방교육세	2,545,640
		지역자원시설세	10,037,710